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上의 契約責任에 대한 研究

정 선 철¹⁾, 金 哲 洙²⁾

A Study on the Liability of contract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un-Cheol Jung, Cheol-Soo KIm

Abstract

This convention has a character of a substantial law as International Goods Sales Contract, and is accumulation of reasonable legislations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Trade. At present, the main states which have trade relation with Korea and more than forty states ratify this Convention. An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world, I think it is significant that we study the contract Liability system by means of preparations for the purpose of ratifica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I have analyzed and investigated synthetically the Contract Liabili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following UNCCIS), and attempted a legislative proposal in connection with amendment of our civil law as compared with the contract Liability system of our civil law and this Convention.

First, In chapter 2, I have contemplated UNCCIS generally. In this chapter, I have examined how this Convention is concluded under how circumstances, what the limit of application and the outline of details are, which relation the proper law and this convention is, and how the joint conditions of this Convention is, how the private law of every country is

1)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事法學科 碩士課程 私法 專攻

2) 韓國海洋大學校 法學科 副教授

effected, etc

According to charter 3, UNCCIS analyzed contract liability. This chapter states contract liability, fundamental characteristics, buyer's duty and responsibility, seller's duty and responsibility, the risk in transit passes and problems with specification. Special characteristics of UNCCIS liabilities a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UNCCIS, breach of contract consist of unified condition of systematic responsibility.

Second, Therefor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like performance in breach of contract in UNCCIS are meaningless. Ever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re included under the condition of breach of contract.. Sellers' warranty defect liabilities are not separated from the breach of contract has same effects without direct. Breach of contract has same effects without direct relations to different forms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ird, UNCCIS has typical content for buyers' and Sellers' duty. Both parties get benefit by delivering goods and paying the price. sellers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like non-payment of the price, non-acceptance of object done by buyers breach of contract. Buyers can als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object for partial purpose on breach of contract.

Fourth, UNCCIS is divided into 「breach of contract of seller」 and 「breach of contract of buyer」 and UNCCIS regulated breach of contract.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it restrained possible cancellation of a contract by giving additional period and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cases are allowed to cancel contract.

Fifth, According to specification of fair average quality an obligation, specific statement on regulation for stability of goods and also special period on objects for partial purpose and the risk in transit passes.

Chapter 4 compared and investigated the convention and basic system for korean civil law's liability of contract, compensation for damages, cancellation of contract, liability of warranty, specification of fair average quality and the risk in transit passes. korean civil law must accept UNCCIS stability of liability of contract system when reforming of civil law takes place in korea.

First, korean civil law separates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 liability of warranty while UNCCIS has unified them with the concept of breach of contract.

Second, Article 390 in civil law demands debtors'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first according principle of liability of fault. In UNCCIS, as long as it has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no fault liability for compensation like require performance, require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reduce the price, compensation for damage come out as methods for remedies.

Third, UNCCIS, unlike korean civil law, regulates buyers' and sellers' right and duty.

Fourth, Even if Breach of Contract cases occur, additional periods are given to provide opportunity for performance and require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Buyers regulates duty of acceptance of goods and if it's not accepted effect of laws are regulated by payment and non payment and cancellation of contracts are approved with limit.

Fifth, principle of sales of goods are regulated slightly in korean civil law. Therefore, reform of law for duty of seller & buyer and inspection of goods should be regulated in detail. After a creditor accepted objects for particular purpose and found out lack of quantity and warranty, debtors should be given notice about nonstability. In addition, regulation on a creditor's delay related to buyer's duty of acceptance must be investigated. Finally, Specific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regarding 「conformity of goods」 in korean civil law in accordance with UNCCIS. both parties must negotiate reestablishment of specific regulations.

1. 序 論

오늘날의 商去來는 국경을 무의미하게 하는 방향으로 글로벌화하고, 다시 새로운 형태의 去來,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去來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는 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國際賣買에 있어서 나라마다의 法의 내용이 다른 것은 契約當事者로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쉽다.

그리하여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國際賣買에 적용하는 法의 統一의 必要性이 주장되어, 統一賣買法에 관한 유엔協約을 작성하려고 하는 시도가 행해지게 되었다.³⁾ 이러한 통일작업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먼저 1964년의 「헤이그統一賣買法」(「物品의 國際的 賣買에 관한 統一法律」과 「物品에 관한 國際的 賣買契約의 체결에 관한 統一法律」)의 성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條約은 유럽 諸國을 중심으로 하여 起草된 결과, 그 내용이 대륙법적인 이론으로 기울었으며 또한 난해하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 條約에의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새로이 성립한 것이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이다. 이 協約은 國際物品賣買에 적용되어야 할 契約法으로서 유엔의 國際商去來法委員會(UNCITRAL)에서 기초하고, 1980년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88년부터 協約으로서 발효하고 있다.

현재 이 協約의 批准國은 미국, 중국, 유럽 諸國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포함하여 40개국을 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국에서 批准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영국과 일본 정도이며, 이제 우리 나라도 이 協約의 批准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協約을 批准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이 協約의 내용을 分析·檢討하며, 우리 民法의 賣買契約과의 관계를 밝히고 또한 이것으로부터 우리 民法에의 시사점을 얻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論文에서는 그 기초작업의 하나로서 특히 契約責任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考察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協約에서는 賣買契約을 履行하지 않은 데 대한 責任을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이라는 單一責任體系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債務不履行責任과 賣渡人の 擔保責任의 二元責任體系를 취하고 있는 우리 民法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協約과 관련한 國內의 研究가 거의 協約의 내용 소개에 그치고 있고, 이것의 契約責任體系와 관련한 研究, 특히 우리 民法과의 관계를 고려한 研究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3) 內田 貴, 「契約法の現代化」, NBL No.581(1995), p.7.

따라서 이 論文은 먼저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에 있어서의 契約責任을 체계적으로 分析·檢討하고, 다음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 民法의 契約責任體系와의 比較·檢討를 통하여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이 우리 民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데 그 目的이 있다.

2.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의 一般的 考察

2.1 序 言

國際物品賣買契約의 내용은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當事者의 合意만큼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契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法이다. 따라서 國際物品賣買契約은 當事者의 合意뿐만 아니라 당해 契約에 적용될 法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특히 英美法系, 大陸法系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法의 體系와 內容이 크게 다르다. 그렇다고 같은 法系에 속하는 나라들의 法이라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國際物品賣買에 적용되는 法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불편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國際物品賣買에 적용되는 法을 統一하는 統一賣買協約의 작성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1964년의 헤이그 統一賣買法(『物品의 國際的賣買에 관한 統一法律』과 『物品에 관한 國際的 賣買契約의 체결에 관한 統一法律』)이 있다.

2.2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의 成立過程

UNCITRAL의 실무위원회는 1976년에 ULIS를 기초로 한 賣買契約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1978년에는 ULF를 토대로 契約成立에 관한 條約 초안을 내놓았다.⁴⁾ 1978년 6월 UNCITRAL은 1978년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유엔 총회는 이 초안의 토의를 위하여 외교회의를 개최하였다.⁵⁾ 그리고 1980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에서 101개 조문으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을 62개국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하여 통과시켰다. 이 協約은 그것이 통과된 날로부터 바로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이 協約 제99조 제2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10번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

4) J.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1982), pp. 52~54 참조

5) 金建植, 『總說 : 비엔나條約의 歷史, 現狀, 將來』 商事法研究 제7권, 1989, 59면 참조.

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달의 초일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1986년 12월 11일 미국, 중국, 이탈리아가 동시에 批准함으로써 이 協約에 批准 또는 가입한 나라의 수가 11개국에 이르러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⁶⁾

2.3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의 構成

유엔賣買契約은 제1편 適用範圍 및 總則(제1조~제13조), 제2편 契約의 成立(제14조~제24조), 제3편 物品의 賣買(제25조~제88조), 제4편 最終條項(제89조~제101조)의 4편, 총 101개의 條文으로 構成되어 있다.

2.4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과 國際私法과의 관계

유엔賣買協約이 적용되는 것은 契約締結時에 있어서 當事者의 營業所가 다른 나라에 있고, 當事者가 그것을 알고 그들의 국가가 이 協約의 가맹국인 경우이다.(協約 제1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營業所』라는 것은 契約 및 그 履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營業소를 가리키며(協約 제10조), 當事者의 國적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協約 제1조) 따라서 外國의 복수의 營業지점을 두고 거래를 하는 기업은 이 協約에의 가맹국이 증가하고 있는 現狀으로 보아, 그 去來에 이 協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訴訟地의 국가가 가맹국이 아니어도 國際私法의 원칙에 의해 가맹국의 法律이 準據法으로 지정된다면, 이 協約에 포함되는 실질 規定이 적용될 가능성은 더 많아지게 된다.

2.5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에의 加入狀況

유엔賣買協約은 1988년에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인 1989년 3월을 기준으로 批准 또는 加入한 國家는 19개국이었다.

헤이그 統一賣買法에 비하여 유엔賣買協約은 훨씬 빠른 시간내에 多數國家의 批准, 加入에 의하여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낙천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유엔賣買協約이 각 國에 있어서 정식으로 法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가장 큰 계기는 1986년 12월 11일 미국, 이태리, 중국이 동시에 批准, 加入함으로써 유엔賣買協約이 발효하게 되었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批准 및 加入에 자극을 주어 현재 유엔賣買協

6) 페터 슈레히트림 (著), 金玟中, (譯) 유엔통일매매법, 서울:斗聖社 1995, 25면 참조.

約의 批准國이 40개국을 넘고 있고, 아직 주요국에서 批准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영국과 일본 정도이며, 우리나라 또한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⁷⁾

제3장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上的 契約責任

3.1 序言

賣渡人과 買受人間의 賣買에 따른 광범위한 관계를 망라한 유엔賣買協約 제 3편은 契約責任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物品의 賣買契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契約當事者인 賣渡人과 買受人의 權利·義務를 추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規律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物品의 引渡와 代金の 支給이 相換的으로 행해진다는 점에 物品의 賣買契約에 있어서 중점을 둔다.

3.2 契約責任의 構造와 基本的 特徵

유엔賣買協約에서는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이라는 하나의 責任體系로 구성하고 있으며 유엔賣買協約에 있어서의 契約責任體系의 特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賣買協約은 독일 民法이나 우리 民法에 있어서처럼 債務不履行責任과 擔保責任이 구별되지 않으며 契約違反이라는 개념하에 동등하게 취급된다.⁸⁾

둘째, 물품이 양, 질, 설명, 포장 또는 내용물의 모습이 계약내용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協約 제35조)에 賣渡人은 契約上的 義務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損害賠償義務를 부담한다(協約 제45조 (1)).

셋째, 유엔賣買協約上 賣買契約에서 賣渡人의 義務와 買受人의 義務는 전형적인 내용을 갖는다. 또한 兩當事者는 物品의 引渡와 代金の 支給이라는 상호대가적인 관계를 갖는다.

넷째, 유엔賣買協約 제47조 제1항은 『買受人은 賣渡人의 債務不履行을 위해 相當한 猶豫期間(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을 부여할 수 있다』고 規定하며, 동조 제2항은 『買受人이 賣渡人으로부터 그 猶

7) Marshall, 李基秀(譯), 「國際去來法の 統一化에 관한 一考察」, 월간고시, 1988. 7, 136면 참조.

8) Leser, Strukturen der Behelfe im deutschen und UN-Kaufrecht in 「Wege zum japanischen Recht」, Festschrift für Kitagawa, 1992, S.457.

豫期間 내에 履行하지 않겠다는 通知를 받지 않은 한, 買受人은 그 猶豫期間 중에는 契約違反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고 規定한다.

다섯째, 유엔賣買協約 제51조 제1항은 『賣渡人이 物品의 일부만을 引渡한 경우에 또는 引渡된 物品의 일부만이 契約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規定(契約違反의 救濟手段)은 부족한 부분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規定한다.

여섯째, 유엔賣買協約 제52조 제2항은 『賣渡人이 契約에 정하는 수량보다 多量의 物品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買受人은 引渡를 받을 수도 있고 초과분의 수량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規定하여 超過數量引渡의 경우 買受人의 權利에 대하여 物品賣買契約 當事者들간 이익조정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檢討하였다.

3.3 賣渡人의 義務와 責任

유엔賣買協約 제30조에서는 『賣渡人은 契約과 이 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目的物을 引渡하고, 그것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며, 또한 그 所有權을 移轉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로부터 賣渡人의 基本的 義務인 財產權 移轉義務가 도출될 수 있는 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目的物의 引渡義務, 서류의 교부의무, 그리고 所有權 移轉義務 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賣渡人이 契約違反時 買受人의 救濟를 위하여 유엔賣買協約은 제3편 제2장과 제3장에서 통합하여 規律하고 있으며, 買受人의 契約解除에 기한 責任, 代金減額責任 등의 消極的 救濟 뿐만 아니라 代替物 引渡責任, 不適合 補修責任, 그리고 履行 猶豫期間의 指定 등의 積極的 救濟도 마련하고 있다

3.4 買受人의 義務와 責任

유엔賣買協約 제53조에 의하면 買受人은 契約 및 이 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金を 지급하고 目的物을 수령할 의무를 진다고 規定하였다. 買受人이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契約違反에 따르는 責任이 발생한다. 買受人의 間接의무로서 『物品의 檢査義務』와 『瑕疵의 通知義務』를 진다

3.5 危險의 移轉과 目的物의 特定

우리 民法은 제375조에 種類債權에 관하여 단 하나의 條文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交通·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모든 국가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일부로 통합되는 세계의 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國際的으로 物品去來가 더욱 활발해지고 또한 OECD의 가입까지 승인받아 세계화시대의 대량거래를 하는 상황에 비취 볼 때 매우 미미한 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當事者의 合의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상세한 規定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6 小 結

유엔賣買協約上의 契約責任의 特徵은 첫째 契約責任을 하나의 責任體系로 구성하였고, 둘째 契約違反을 履行遲滯, 履行不能, 不完全履行의 유형별 구분을 취하지 않았으며 效果에 대해서도 유형과 직접 관계없이 공통으로 부여하였고, 셋째, 賣渡人의 義務와 買受人의 義務라는 전형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며, 넷째, 賣渡人의 契約違反과 買受人의 契約違反으로 구분하여 契約違反을 구분하였고, 다섯째, 不完全履行에 관련하여 一部履行과 瑕疵있는 履行을 規定하였으며, 一部履行과 全部履行의 效果를 약간 달리 規定하였으며, 마지막으로, 種類債權에 있어서 「物品의 適合性」에 관한 規定을 자세히 두고 있으며, 目的物의 特定時期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規定을 두고 있으며, 危險의 移轉時期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과 우리 民法의 比較·檢討

4.1 序 言

유엔賣買協約은 契約責任體系에 관해 英美法體系에서 채용되고 있는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의 單一責任體系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 民法은 大陸法系의 獨逸法을 계수함으로써 債務不履行과 擔保責任의 二元的 責任體系를 형성하고 있음에 兩者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契約責任體系의 상이함에서 빚어지는 부작용과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비판과 거부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서, 하나의 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契約責任의 體系

4.2.1 基本的 體系

유엔賣買協約에서는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이라는 하나의 責任

體系를 구성한다. 즉 우리 民法에서처럼 債務不履行責任과 擔保責任이 구별되지 않으며⁹⁾, 契約違反이라는 개념에서 동등하게 취급된다.

4.2.2 過失責任主義

유엔賣買協約은 無過失責任主義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 民法은 債務不履行責任에서는 過失責任主義를, 擔保責任에서는 無過失責任主義를 취하고 있다.

4.3 損害賠償請求權

損害賠償請求權의 發生要件에 관해서는 앞서 契約責任과 관련하여 언급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損害賠償의 범위확정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기로 한다.

4.4 契約의 解除

우리 民法은 當事者가 契約締結時에 미리 解除權을 留保해 두는 約定解除權과 더불어 法律의 規定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法定解除權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賣買協約에서는 義務違反에 대한 契約解除를 當事者의 意思에 일임하려는 취지에서 約定解除만을 規律하고 이른바 當然의 解除(ipso facto avoidance)는 삭제하였다.¹⁰⁾

4.5 瑕疵擔保責任

우리 民法과 유엔賣買協約을 比較해 볼 때 우리 民法에는 物品의 賣買에 대하여 法原則이 아주 미미하게 規定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物品賣買에 대한 消費者 去來는 많은 法律問題를 야기하므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상세한 規定을 民法에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6 危險의 移轉과 種類債權의 特定

4.6.1 危險의 移轉

危險移轉 時期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보험제도라는 인자가 개입되어

9) 金哲洙, 「債務不履行責任의 構造에 관한 研究」, 동아대 대학원, 1993. p.131~135 참조.

10) 山田恒夫, 民法理論からみた國際統一賣買法の意義, 判例タイムズ No.739, 1990.12., p.34

지기 때문에, Honnold교수는 이 協約의 危險移轉 원칙을 정하는 데는 賣渡人, 買受人 중 누구에게 危險을 配分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선택은 다양한 國際賣買 거래실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과 단순성을 지향하는 입법기술적 요청을 충족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고 토로하였다.¹¹⁾ 따라서 유엔賣買協約에 내재하는 그러한 제약하에서는 운송기술의 발달과 다양해지는 國際物品賣買에서 실효성있게 危險移轉의 문제를 대응해갈 수 없다. 이것은 또한 民法이 危險移轉에 관해 세세히 입법화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변명 내지 항변이 될 수도 있겠다.

4.6.2 契約目的物の 特定

우리 民法은 제375조에 種類債權에 관하여 단 하나의 條文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UN賣買協約은 國際去來 現實上 危險의 移轉時期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國際物品賣買契約 형태중에서 運送을 전제로 한 契約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 『種類債務에서 目的物の 特定』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規定하고 있다.

4.7 小 結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엔賣買協約이 우리 民法에 시사하는 점을 여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 民法과 같이 債務不履行과 瑕疵擔保責任을 별도로 規定하지 않고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이라는 하나의 責任體系로 구성하였다. 즉 『契約이나 이 協約에 정하는 契約의 違反』을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契約違反』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둘째, 損害賠償請求에 있어 우리 民法은 제390조의 『債務者の 故意 또는 過失』을 요구함으로써 過失責任의 原則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유엔賣買協約에서는 債務의 不履行만 있으면 그것이 債務者の 歸責事由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契約違反으로 되어 無過失責任으로 強制履行의 請求, 補完請求, 解除權發生, 代金減額, 損害賠償 등의 여러 法的 救濟手段이 발생한다

셋째, 賣渡人과 買受人의 權利·義務를 구체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物品의 引渡와 代金の 支給은 等價性을 갖고 相換的으로 履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배려이다.

넷째, 비록 契約違反의 사실이 있더라도 猶豫期間을 두어 履行이나 瑕疵補完의 기회를 부여하며, 「重大한 契約違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契約의 解除

11) Honnold, Risk of Loss, in Galston & Smit ed. International Sales, 8-2 梁明朝, 『權利移轉과 危險負擔』, 商事法研究 제7집, 178면에서 재인용.

를 인정하고 있다. 買受人의 物品受領義務를 規定하고, 受領하지 않는 데 대한 法律效果를 代金を 지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規定하며, 불수령으로 인한 契約解除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民法에는 物品의 賣買에 대하여 法原則이 아주 미미하게 規定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民法改定時에는 物品賣買에서 賣渡人의 義務와 買受人의 義務를 상세히 規定하고 物品의 檢査에 관한 規定, 債權者가 目的物 受領 이후 수량 부족이나 瑕疵 등의 부적합을 알았을 때 債務者에 대해 부적합통지를 할 것을 規定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債權者遲滯와 관련하여 買受人의 受領義務에 관한 規定을 둘 것인가도 檢討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 民法에 있어서 유일한 제375조의 種類債權에 관한 規定은 요즘과 같은 대량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種類賣買를 충분히 제어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부적합하다. 즉 우리 民法은 유엔賣買協約에서 자세히 規定 지우고 있는 『物品의 適合性』에 관한 구체적으로 規定하는 문제를 檢討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當事者의 合意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상세한 規定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種類債權의 特定時期에 대하여 현행보다 더 자세한 規定을 둘 것, 債權者의 目的物 變動權을 特定後 인정할 것, 特定에 따르는 危險의 移轉時期에 관해서도 자세한 規定을 둘 것 등이 요망된다.

5. 結 論

유엔賣買協約은 契約法 내지 國際去來法에 관한 세계의 전문가를 모아 기초한 것으로서 英美法, 大陸法, 이슬람法 등등의 法系의 차이를 넘어 탐구된, 말하자면 첫번째의 공식적인 인류공통의 賣買契約法規範이다. 이 協約은 當事者에 있어서 명확성과 이해하기 쉬움을 추구하고, 契約과 障害時에 있어서 그 대응을 자기책임에 기하여 형성하기 위한 수단(일방적인 契約解除權 등등)을 當事者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있어서 현대적인 해결방법도 대륙유럽의 학문 및 比較法의 諸成果와 같이 고려되고 있다. 실무에 있어서 그 적용상의 과제는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유엔賣買協約의 學文上的 수확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獨逸에 있어서는 50년간에 걸치는 통일화의 작업으로부터 만들어진 해결방법이 獨逸 民法典의 改正에 대한 직접적인 結論으로 된다. 현재 진행중인 債務法의 改正에 있어서는 債務不履行에 관한 獨逸의 전통적인 法理論에 대신하여 이 유엔賣買協約이 갖고 있는 평이한 契約法의 접근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개정초안대로 獨逸 民法이 改正되기는 실제로는 곤란하다고 하여도 私法의 統一의 흐름이 獨逸 民法의 개정초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論文은 이와 같이 國際賣買契約에 있어서 중요한 法規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각 國의 民事立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엔賣買協約에 대한 研究의 한 過程으로서 契約責任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分析·檢討하고, 그것과 우리 民法과의 比較·檢討를 통하여 우리 民法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論文에서 검토한 내용들은 이 문제에 관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 방면의 보다 깊은 研究가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 [1] 金哲洙, 「債務不履行責任의 構造에 관한 研究」, 동아대 대학원, 1993. p.131~135 참조.
- [2] 金建植, 『總說 : 비엔나條約의 歷史, 現狀, 將來』 商事法研究 제7편, 1989, 59면 참조.
- [3] 페터 슈레히트림 (著), 金玟中, (譯) 유엔통일매매법, 서울:斗聖社 1995, 25면 참조.
- [4] Marshall, 李基秀(譯), 「國際去來法の 統一化에 관한 一考察」, 월간고시, 1988. 7, 136면 참조.
- [5] Honnold, Risk of Loss, in Galston & Smit ed. International Sales, 8-2 梁明朝, 『權利移轉과 危險負擔』, 商事法研究 제7집, 178면에서 재인용.
- [6] 內田 貴, 「契約法の現代化」, NBL No.581(1995), p.7.
- [7] 山田恒夫, 民法理論からみた國際統一賣買法の意義, 判例タイムズ No.739, 1990.12., p.34
- [8] Leser, Strukturen der Behelfe im deutschen und UN-Kaufrecht in 「Wege zum japanischen Recht」, Festschrift für Kitagawa, 1992, S.457.
- [9] J.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1982), p.52~54 참조

